

- 사법은 사인과 사인이 수평대등함을 전제
- 민법에서는 관습법 인정

재산관계와 법

▶ 계약

- 계약의 성립: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될 때
- 약관: 공급자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표준계약서
- 채무불이행 책임 없는 경우: 1) 천재지변 2) 무효 3) 취소권 행사
- 계약이 취소될 경우,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채무 관계가 발생 X
- 위약금: 계약을 위반했을 때. 취소권 행사는 위반 X
- 사기에 의한 계약은 무효는 아니고, 취소할 수 있다.
- 동의를 위조했지만, 사기를 당했다면 취소가능
- 계약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을 행사 불가
- 추인: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
- 무효: 특정인의 주장을 기자리지 않고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
- 유아, 정신병자, 만취자등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
- 불공정 C 반사회
-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
- 판매자는 계약의 철회할 수 있지, 취소할 수는 없음
- 용돈으로 샀다면 판매자는 철회권도 없고, 환답권도 없음
- 용돈은 법정대리인이 준 경우에만 인정. 다른 가족(할아버지)은 한번 Check
- 철회권은 미성년자, 법정대리인 둘 다에게 행사 가능

▶ 능력

- 권리능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며, 책임능력과는 다른 문제다.
- 의사능력: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
- 행위능력: 단독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. 객관적인 기준 존재
- 태아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음.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상속권은 예외적으로 인정. 태아가 살아서 출생함을 전제
- 심장박동이 정지하는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봄
-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됨
-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

▶ 불법행위

- 책임능력이 있어야 일반불법행위 성립
- 감독자책임, 사용자 책임, 점유자 책임은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함. 무과실/과실 책임주의 x
- 피해자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
- 후발손해: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후발 손해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
-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금전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
-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방법은 민사 조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, 소액사건 심판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
-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금전적 배상 이외에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부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. 법원이 직권으로 처분할 수는 없음.
- 망을 봤다 → 공동불법행위
- 공동불법행위에서는 누가 얼마만큼 피해를 줬는지 고려 X
- 종업원에게 독촉을 하더라도 책임 묻기 어려움

가족관계와 법

▶ 혼인 및 이혼

- 혼인은 만 18세 이상부터
- 실질적 요건: 의사 합치+장애사유 無 / 형식적 요건: 혼인신고
- 사실혼도 일상가사 대리권과 연대채무가 인정
- 사실혼 배우자가 타인과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중혼 X
-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재산 안 됨. 혼인 중 각자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
- 배우자의 생산 불명이 3년이 이상 지속된 경우
- 협의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효력 발생
-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가 없더라도 효력 발생
- 재산 분할은 명의 상관 無

▶ 친권

- 친생자 = 혼생자 + 혼외자
- 혼인 외의 자에 대해父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음
-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.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당연히 남은 배우자가 갖는 것은 아님
- 친권남용이 발생하면 법원이 친권상실 선고
- 친권상실 선고를 받더라도 친자관계는 유지
- 성년 의제되면 친권은 소멸

-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가정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둘 다 면접교섭권을 갖음
- 재혼 후에도 면접 교섭권은 인정

▶ 상속

- 만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유언 가능
- 상속의 개시는 사망 신고와는 무관
- OO재단은 지정 상속인, 가족은 법정 상속인
-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속을 포기할 수 없음
- 지정상속인은 사망 시점부터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.
- 형제자매, 직계 존속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1/3

▶ 입양

-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
-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함
- 일반입양: 친생자와 같은 지위 / 친양자 입양: 혼인 중의 자
- 일반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나오면 신고하면 됨
- 친양자 입양
 - 미성년자만 가능
 - 13세 미만: 법정 대리인의 승낙 / 13세 이상: 법정 대리인의 동의 + 당사자 승낙
 - 가정법원의 재판 필요: 입양 심판을 청구하고, 그 청구가 인용 결정되어 효력 발생
 - 친생 부모의 면접 교섭권 소멸
 - 서로 다른 집안으로 가면 형제 관계 끊어짐

형법의 이해

- 원칙상 고의에 의한 행위만 범죄가 됨, 과실로 인한 행위는 예외 (과실치사...)
- 정당행위: 업무상, 법령상, 기타 사회상규 → 위법성 조각
- 상당성=오버 금지: 정당방위, 긴급피난, 자구행위
- 정당방위·긴급피난은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 필요
- 책임: 정상적 행동 기대 가능성 =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
- 형사미성년자는 책임이 조각되지만, 만 10세 이상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음
-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책임이 조각된 경우에만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농아자는 책임 감경 받드시
- 형법의 기능